



함께여는미래. 더불어누리는연수

2019~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



연 수 구
기획예산실

2019~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

중·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구의 비전과 합리적인 구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·사회적 여건변화와 투자우선 순위, 자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한 2019~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☐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), 제36조(예산 편성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
-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

☐ 수립 필요성

-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연동화계획으로 운영
 -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, 전략적 자원배분기능 강화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
 - 투자심사,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

II

수 립 개 요

☐ **계획기간:** 2019 ~ 2023년 [5년]

☐ **작성대상:**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

☐ **주요내용**

- 재정목표: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재정전망: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
- 투자계획: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☐ **주요 작성기준**

- **[2019년]**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**2018년도 최종예산안**을 기초로 작성하되, **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수립**
 - **[2020년 이후]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9년 예산규모** 및 지역 내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 수립
 - 「2018~2022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, '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
 -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「2018~2022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
 - 「2018~2022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수립 이후 법령 제·개정,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
- ※ 투자계획 조정 시,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

Ⅲ

세부 작성지침

1. 중기재정 운용계획(총괄)

□ 세입·세출 총괄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을 포함한 세입, 세출계획 총괄(표) 및 세입자원별, 회계별, 연도별 내역의 개괄작성

□ 회계·연도별 운용계획

- 연도별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총괄계획 및 자원배분 전망
- 각 회계와 기금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세입·세출계획 작성, 개략적인 설명 등을 포함하여 회계(기금)별로 작성
 - **【특별회계】** 세입·세출 연도별 규모 일치, 세입 범위 내 세출추계
 - ※ 세출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작성한 경우 동일 규모만큼 세입반영
 - **【기 금】** 기금의 존속기간,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작성(지방기금법 제4조)

□ 재정 통계전망

-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전망과 관리방안
- 의무 및 재량지출 전망과 관리, 지역재정통합통계 전망
-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, 국가 및 지방계획 현황



※ 연도별 경제성장률(한국은행 제공)

2. 중기 세입 계획

☐ 지방세 및 세외수입

- **[총괄]** 「2018~2022 중기지방재정계획」 및 「2018~2022 국가재정 운용계획(안)」 참조
 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$\pm 2\%$ 를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- **[지방세]** 최근 5년간 징수실적 기초로,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우리 구 세수여건 등을 종합고려
 -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활용하되,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 - ※ 주경 편성을 감안하여 2019년 당초예산 반영액 보다 크게 작성
- **[세외수입]**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, 세외수입 실무편람,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
 - 정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018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
 -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
☐ 이전재원 추계

- **[총괄]**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, 국가경제 전망 및 2017~2021 국가재정 운용계획, 2018~2022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 고려
 - 이전재원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- **[교부세]**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의 지방교부세 규모(증가율)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교부받은 총액과 내국세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

- **[보조금]**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18~2022 국가재정 운용계획(안) 참조하여 작성하되, 중기계획 수립 당시까지 교부결정액 반영
 -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계획에 반영
 -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 및 시비 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
 - ※ 기초연금 인상, 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등 복지관련 보조금 증가 고려

3. 중기 세출 계획

☐ 이호조 입력 및 작성기준

-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사업예산을 모두 포함하고, 이 중 사업예산은 사업구조화 상의 모든 사업 포함
- 세부사업계획은 분야·부문별로 사업예산(보조사업+자체사업)에 대해서 입력하되, 정책·단위·세부사업 순으로 작성
 -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의 경우 기 투자 및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
 -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
- 교부세(보통, 특별, 부동산)는 자체사업(구비)으로 입력
-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항 반영
- 2019년도 추진예정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
 - 예산편성 및 심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확인
-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자료 제출(신규)
 - (대상) 9. 15.까지 가내시 된 '19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
- 국·시비사업은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

○ 보조금은 국비, 시도비, 자체사업 등 재원별 구분하여 입력

※ 연도별 투자계획 입력 시, 기금 및 국고보조금,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정확히 입력, 자체/보조, 국가/지방계획, 투자심사대상 누락 없이 체크

□ 분야별 정책방향 · 투자계획 및 주요투자사업 설명서

○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(붙임4)

- e호조 입력 시 중기대상사업(총사업비 20억 이상,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)은 중기재정계획 대상에 체크√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입력
-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예비비는 작성대상에서 제외

<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기준 >

- **총 사업비 20억원 이상**(기초자치단체 2018년 예산 3천억원 이상 시)
- 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**사업비 1억원 이상**
(투자심사 기준과 동일, 민간자부담 분포함)

$$\text{※ [총사업비]} = \boxed{\begin{array}{c} \text{기투자} \\ (2018년 \\ \text{집행예산액 포함}) \end{array}} + \boxed{\begin{array}{c} \text{5개년 계획} \\ (^{\circ}19 \sim ^{\circ}23) \end{array}} + \boxed{\text{향후 투자액}}$$

➡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사업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
(기투자, 향후투자 미작성)

○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(붙임5): 투자심사 대상사업

- 2019년 신규사업, 투자심사 의뢰 예정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

○ 분야별 정책방향 작성(붙임6): 부서별 해당내용 작성

IV

행 정 사 항

□ 사전절차 이행절차

○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을 기초로 **예산편성**(지방재정법 제36조)

- 중기재정계획의 범위 안에서 예산요구 및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원칙

○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만 **투자심사**(지방재정법 제33조)

□ 중기대상 관련자료 제출(전부서): 2018. 9. 27.(목) 까지

- 제출서식 안내: 세부추진 일정표 참조
- e호조 입력 관련 별도 안내자료 배포

□ 세부추진 일정표

제출서식	내용 및 작성방법	일 정	담당부서
세입전망 붙임 ①	○ 중기세입전망(일반회계) - 세무12과 및 해당부서(총괄전망, 세목별 세입추계 및 전망분석 포함)	9.27.한	세무1,2과 해당부서
특별회계 기금서식 붙임 ②③	○ 특별회계 및 기금 중기수립계획 - 해당부서		해당부서 (서식참조)
분야별 주요세부 계획서(엑셀) 붙임 ④	○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계획서(엑셀) 작성대상(일반·특별, 기금) - 총 사업비* 20억 이상, 행사축제 1억 이상 *e호조 사업예산구조화 중 연도별 투자계획의 합계		해당부서 (서식참조)
사업설명서 붙임 ⑤	○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(투자심사 의뢰 대상) - 총사업비 20억 이상, 행사·축제 1억 이상 -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「2018~2022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		해당부서 (서식참조)
분야별 정책방향 붙임 ⑥	○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- 일반공공 행정분야,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10개 분야		해당부서 (서식참조)
e호조 입력	○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호조) 입력 및 제출 - 사업예산구조화의 기본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 ※ 정책사업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모두 포함 ·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,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 - 세입·세출 중기재정계획 <u>등록 및 제출요청</u>		전 부서
취합자료 검토	○ 분야별 작성자료 검토 및 보완 - e호조 세입·세출 중기재정계획등록 조정	10.22.한	기획예산실
	○ 중기지방재정계획(안) 작성 및 확인	10.31.한	
	○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	11. 7.한	
	○ 구의회 제출(예산안 첨부서류)	11.12.한	
	○ 행정안전부 제출(e호조 송신)	11.30.한	